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7일, 남진삼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5년 6월 9일 회부
- 상정일자: 제30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5년 6월 10일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남진삼 의원)

가. 제안이유

- 관할구역의 광범위함에 따른 신속한 현장 대응의 필요성 및 군민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신고가 빈번한 지역 및 주요 거점 장소에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순찰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순찰차 정의 및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안 제10조의4제1항)
-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 및 보조표지 설치(안 제10조의4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남진삼 의원
- 제안일자 : 2025. 5. 7.
- 회부일자 : 2025. 6. 9.
- 상정일자 : 2024. 6. 10.

2. 제안이유

- 관할구역의 광범위함에 따른 신속한 현장 대응의 필요성 및 군민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신고가 빈번한 지역 및 주요 거점 장소에 순찰 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순찰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순찰차 정의 및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안 제10조의4제1항)
-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 및 보조표지 설치(안 제10조의4제2항)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주차장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노상주차장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입법의 취지

- 관내 신고가 많은 거점장소 인근 주차장에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 및 표지판 설치를 규정하여 평창군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마련 및 질서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10조의4(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서 노상 주차장 중 일부에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안내표지 및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5. 종합검토의견

- 관내 신고 다발 구역에 순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신속한 출동 및 민원 해결을 통해 평창군의 안전한 환경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고,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및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지정
-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 ②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진삼 의원)

의안 번호	426
----------	-----

발의 연월일 : 2025년 5월 7일
발의자 남진삼 의원
찬성자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의원

1. 제안이유

넓은 관할구역, 신속출동, 군민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내 신고 다발지 거점장소에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가 필요한 점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순찰차 정의 및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안 제10조의4제1항)
- 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 설치 및 보조표지(안 제10조의4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다.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5. 4. 22. ~ 4. 28.(의회사무과-1732), 의견없음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의 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순찰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찰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범죄예방 및 기타 긴급사태를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제5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10조의4(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순찰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u> 이 경우 “순찰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범죄예방 및 기타 긴급사태를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말한다.</p> <p><u>②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제5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u></p>

[관계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7. 27. >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 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으로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용주차구획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이하 이 항에서 “전용주차자동차”라 한다)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전용주차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21. 4. 16.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1. 4. 16.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10조의4(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순찰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찰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범죄예방 및 기타 긴급사태를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제5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의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남진삼의원
연락처	(033) 330 -2500